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 >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97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2204497)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취지	4
2) 유사입법례	7
3) 국유재산 특례	8
4) 공유재산 특례	10
다. 정부 의견	11
1) 국토교통부	11
2) 행정안전부	12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220449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

다.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허가·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허가·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u>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¹⁾은 원칙적으로 ①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한 때 매년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여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일반재산의 경우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매년 대부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양여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③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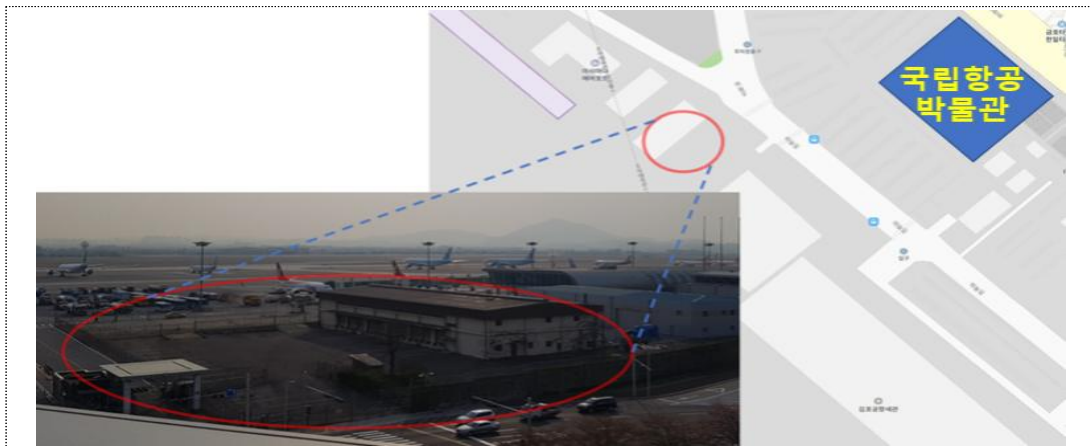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기 및 중대형 항공자료를 수장하는 복원랩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복원랩 시설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임차료(1,80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국립항공박물관

1) 참고. 국·공유재산의 양여·사용·대부 관련 조문

입장에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복원랩 사업 개요 】

- **(복원랩)** 항공기 및 중대형 항공자료 수장시설 구축
 -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1(김포공항 내, 구 미군우체국)
 - (면적) 380m²(1,444m² 건물 내 일부 공간 사용)



- * 현재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사고기 보관 창고로 사용중인 공간을 일부 공동 사용
- **(시설 운영)** 중대형 항공자료 수장, 격납 및 향후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항공자료 수장) 대한항공 기종기(CE-560) 해체 격납, 보존 등
 - (프로그램 운영) 항공정비분야 대국민 체험 프로그램 등 추진 예정

자료 : 국립항공박물관

이에 더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항공기 중 기령이 25년 이상으로 퇴역이 필요한 항공기를 항공유산으로서 수집하여 전시하고자 하는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전시 희망 항공기 】

가액	세부정보																																										
대당 436백만원 ~ 2,712백만원	<정부 소유 퇴역예상 항공기체 대상>																																										
	<table><tr><th>소유자</th><th>등록기호</th><th>형식</th><th>제작번호</th><th>제작일자</th><th>기령</th></tr><tr><td>산림청</td><td>HL9177</td><td>BELL206L-3</td><td>51242</td><td>88.04.21</td><td>36</td></tr><tr><td>인천광역시</td><td>HL9408</td><td>BELL230</td><td>23032</td><td>95.02.01</td><td>29</td></tr><tr><td>산림청</td><td>HL9416</td><td>KA-32T</td><td>9205</td><td>96.05.14</td><td>28</td></tr><tr><td>국립공원 관리공단</td><td>HL9465</td><td>KA-32T</td><td>96-01</td><td>97.04.24</td><td>27</td></tr><tr><td>중앙119 구조본부</td><td>HL9451</td><td>AS-365N2</td><td>6504</td><td>97.01.24</td><td>27</td></tr><tr><td>서울시</td><td>HL9447</td><td>AS-365N2</td><td>6518</td><td>97.07.10</td><td>27</td></tr></table>	소유자	등록기호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기령	산림청	HL9177	BELL206L-3	51242	88.04.21	36	인천광역시	HL9408	BELL230	23032	95.02.01	29	산림청	HL9416	KA-32T	9205	96.05.14	28	국립공원 관리공단	HL9465	KA-32T	96-01	97.04.24	27	중앙119 구조본부	HL9451	AS-365N2	6504	97.01.24	27	서울시	HL9447	AS-365N2	6518	97.07.10	27
	소유자	등록기호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기령																																					
	산림청	HL9177	BELL206L-3	51242	88.04.21	36																																					
	인천광역시	HL9408	BELL230	23032	95.02.01	29																																					
	산림청	HL9416	KA-32T	9205	96.05.14	28																																					
	국립공원 관리공단	HL9465	KA-32T	96-01	97.04.24	27																																					
	중앙119 구조본부	HL9451	AS-365N2	6504	97.01.24	27																																					
서울시	HL9447	AS-365N2	6518	97.07.10	27																																						
* ATIS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가, 지자체 소유 항공기 중 기령이 25년 이상된 장치 목록(퇴역 필요 기체(단, 기증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님))																																											

자료 : 국립항공박물관

그러나 해당 국·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재정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산확보 및 교부·집행 등 행정부담을 초래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설립 목적인 항공문화와 항공산업 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를 위한 사업 추진에 곤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 제11조의2 제1항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재정부담 등을 해소하고 국립항공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1조의2 제2항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²⁾로 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장기간 대부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유사입법례

「국립농업박물관법」 등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립농업박물관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사용허가·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국유·공유재산 특례 유사입법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국·공유재산의 양여·사용·대부 관련 조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3.2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3.27.>

다만, 또 다른 박물관에 관한 법률인 「국립해양박물관법」에는 개정안과 같은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3) 국유재산 특례

개정안 중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대부와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대부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사용허가 등은 국유재산특례³⁾로서,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⁴⁾함.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에 본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유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복원랩 수장고 건물 1건)의 연간 임차료가 1,800만원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1,800만원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추계하였고, 이에 더해 다른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가 이루어진다면 더 큰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임.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대여료 감소)】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허가·대부 등 (안 제11조의2 신설)	△18	△18	△18	△18	△18	△90	△18

주: 동 재정수입 감소액은 전액 국비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립항공박물관법」⁵⁾에 따라 출연기관으로서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5)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매년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라 국유재산 임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국립항공박물관은 사실상 정부 출연금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공유재산 특례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공유재산 특례의 공익적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같이 특례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통제가 비교적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특례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양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을 양여⁶⁾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점차 잠식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양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2조도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립항공박물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7)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현재 국립항공박물관은 매각된 재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수집할 순 있으나, 매각행위에 대한 정부의 행정부담과 매입가격에 대한 박물관의 재정부담 등으로 사실상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며, 추후 실물 항공기 등 중대형 전시물을 수집·전시하기 위해 수장고 확보도 필요하나 국·공유 시설·부지 사용료 부담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 건립·운영 취지에 맞게 항공유산 계승 역할 등 고유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7)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개정안은 대부 주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수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동 법이 개정되더라도 완전한 효력 발생을 위하여 국유재산 특례내용을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개정 병행이 필요함.

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안 제11조의2에서 국립항공박물관에 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0

참고

국·공유재산의 양여·사용·대부 관련 조문

①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단서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처분 제한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④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징수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그 밖의 재산: 1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⑥ 일반재산의 양여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